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영상취재기자들의 인식 연구*

심 미 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방송사의 영상취재기자들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을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에 사용할 초상권 침해 사례들은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발간한 <영상보도가이드 라인>을 참고했다. <영상보도가이드라인>에 담긴 초상권 침해관련 사례들은 23개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집회 및 행사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범죄자 및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등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보다는 언론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관련 23개 사례 중에서 12-13 사례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았다. 둘째, 초상권 침해 유형별 인지 수준을 살펴보면, 인지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순이다. 반대로 인지수준이 가장 낮은 유형은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범죄자 및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로 나타났다. 셋째, 영상취재기자 활동기간에 따라서도 초상권 침해 인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취재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10년 미만 기자들이 초상권 침해규정에 대해 가장 잘

* 본 논문은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음.

** mesun63@sch.ac.kr

알고 있었다. 넷째,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편집상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인지하는데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반대로 초상권 침해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졌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영상취재기자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 초상권 침해의 유형들, 취재활동 기간

목 차

- I. 문제제기
- II. 기존문헌 검토: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논의
 - 1. 언론 보도에서의 초상권
 - 2.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관련 쟁점들: 공익과 동의를 중심으로
 - 3. 초상권 침해 예방을 위한 영상보도가이드라인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1. 유형별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
 - 2. 초상권 침해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
 - 3. 취재활동 기간에 따른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
- V. 요약 및 논의

I. 문제제기

디지털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미디어에서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인의 초상권 침해는 언론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빈번해지고, 여기에 개인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언론표현의 자유와 초상권 침해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1994년 이화여대 학생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991년 11월 11일자에 한국의 과소비와 배금주의 풍토를 비판하면서 졸업식 사진을 찍고 나오는 이대생 5명의 사진을 찍고 “돈의 노예들: 이화여대 학생들”이라는 부제를 달아 무단 게재하자 해당 여대생들이 소송을 제기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3명의 이대생에게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¹⁾.

원래 초상권 침해는 명예훼손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대생-뉴스위크 손해소송 이후 초상권 침해를 단독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초상권관련 판례를 분석한 동세호외(2016)는 초상권 침해 소송은 1990년대보다는 2000년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1990년대 초상권 분쟁이 월간잡지를 상대로 한 분쟁이 다수를 차지했다면, 2000년대의 초상권 분쟁은 TV방송에 집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보고된 초상권 침해관련 판례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1-3건의 초상권 침해관련 판결이 나왔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 건도 없다가 2021년에 다시 4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초상권 침해 신청 건수는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초상권 침해관련 조정 건수를 보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과 2015년에 초상권 침해관련 조정 건수가 200건 이상으로 급증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40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2021년에 다시 86건으로 늘어났다.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초상권 침해관련 분쟁자료를 보면 법원을 통한 초상권 침해소송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초상권 분쟁조정은 늘어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초상권 침해관련 소송 및 조정 건수

초상권 침해관련 법원 판례 건수 ²⁾				언론중재위원회 초상권관련 조정 건수 ³⁾				
판결 연도	판결 건수	판결 연도	판결 건수	연도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합계
1990년	1	2006년	6	2005년	15	2	14	31
1991년	-	2007년	8	2006년	48	7	1	56
1992년	-	2008년	7	2007년	53	12	3	68
1993년	-	2009년	6	2008년	29	10	4	43
1994년	2	2010년	6	2009년	56	5	1	62
1995년	0	2011년	4	2010년	109	3	4	116

1) 조선일보(1993. 07. 09), “매도당한 이대생 3명에 3천만원씩 배상하라” 참조

초상권 침해관련 법원 판례 건수 ²⁾				언론중재위원회 초상권관련 조정 건수 ³⁾				
판결 연도	판결 건수	판결 연도	판결 건수	연도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합계
1996년	1	2012년	6	2011년	39	-	22	61
1997년	1	2013년	3	2012년	128	8	43	179
1998년	7	2014년	3	2013년	82	5	23	110
1999년	3	2015년	1	2014년	208	5	8	221
2000년	4	2016년	3	2015년	205	14	10	229
2001년	2	2017년	2	2016년	81	-	19	100
2002년	5	2018년	-	2017년	105	4	18	127
2003년	2	2019년	-	2018년	59	2	19	80
2004년	1	2020년	2	2019년	28	5	7	40
2005년	3	2021년	4	2020년	45	6	12	63
				2021년	66	13	7	86
합계		93건		합계	1,356	101	215	1,672

더욱이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면서 언론보도에서 영상콘텐츠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가 되었다. 과거 영상자료는 뉴스 내용의 진위를 확인시켜 주는 보조자료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은 영상 그 자체만으로도 뉴스가 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나 전해들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기 때문이

2) 초상권 침해관련 법원 판례 건수의 경우 1990~2014년까지는 동세호(2016)의 연구를 참조했고, 2015~2021년까지는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와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217373> 사이트에서 ‘초상권’으로 검색해 나온 판례들을 연도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중복으로 나온 판결들은 하나로 계산하였다. 연도별로 초상권 침해소송관련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201154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판결; 확정;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확정; 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6243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232254, 판결; 항소;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466, 판결; 확정.

3) 언론중재위원회 초상권 침해 조정 건수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정리했다. https://www.pac.or.kr/kor/pages/?p=69&b=B_1_6&cate=PD01

다.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의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속담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속담은 시각적 소구가 사람들의 신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말해준다.

디지털미디어 환경 하에서 언론사간 속도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졌다. 언론들은 경쟁사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생생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도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화면을 통한 상업적 경쟁이 노골화되면서 개인의 초상권 보호가 더욱 소홀해지고 있다(강형철, 2007). 문제는 미디어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영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의 초상권 침해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초상권 침해는 해당 언론사에 비용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초상권 침해와 유사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손해배상과 형법상의 제재를 모두 인정하는 반면 초상권 침해는 민사소송법상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초상권 침해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되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저야하기 때문에 배상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언론유관기관 및 언론사에서는 초상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취재 및 편집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는 일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심석태(2014)는 초상권과 언론의 자유가 갈등 관계에 놓일 때 법원은 초상권 침해에 따른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치중해 언론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심석태의 주장처럼 개인의 초상권을 보호하려면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지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로 한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반론 및 정정 보도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온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 보도에서의 개인의 초상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양재규, 2012; 이승선, 김연식, 2009)

도 설득력을 갖는다.

초상권 침해와 언론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는 계속 논의과정을 거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디어에서 개인의 초상권 침해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언론사가 초상권 침해 분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영상취재기자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영상취재기자들은 다양한 취재상황에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존문헌 검토: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논의

1. 언론 보도에서의 초상권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민주주의의 실천을 담보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다(이재진,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늘 첨예하게 부딪힌다. 특히 언론사간 속보경쟁은 경쟁사보다 더 빨리 생생하고 실감나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도하고 싶다는 의욕 때문에 초상권 보호에 필요한 화면처리나 음성변조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상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과 시비도 늘어나고 있다(손영준, 2012; 심석태, 2014; 이재진·동세호, 2015). 그러나 사법부는 언론의 초상보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언론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개인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초상권 보호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심석태, 2014; 이인호, 2015). 2016년까지의 초상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동세호(2016)의 연구에서도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비율은 28.4%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에 비해 초상권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2001년 이후 언론자유와 특수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늘기 시작했다(박진우, 2008, 37쪽). 원래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비상업적인 초상 이용을 둘러싸고 초상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2001년을 기점으로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원래 초상권 개념은 독일의 인격권 개념에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을 수용한 것으로 초상권을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함석천, 2006). 우리나라에서 초상권 개념은 법원의 판례와 학술적 논의를 통해 정립되었는데, 법원 판례에 의하면,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자 판결 97가합8022)을 말한다. 이러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 작성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 영리권)를 포함한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자 판결 97가합8022).(김경호, 2003, 259쪽 재인용)

이후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초상권을 인격권의 일부로 명문화하고, 초상권 침해 면책사유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손영준, 2012; 유의선, 2008; 이승선, 김연식, 2009; 함석천, 2006).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은 “언론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밖의 인격적 가치부여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초상권을 인격권의 하나로 보고 있다. 또 제5조 제2항에서는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초상을 공표할 ‘공익성’ 또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외에 방송심의규정에도 초상권관련 조항이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보호)는 부당하게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제2항),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언론중재법과 방송심의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초상권에 대한 기본 개념만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취재기자들의 입장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취재 상황에서 개인의 초상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특정인의 초상을 촬영, 보도할 수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황별로 보다 구체적인 보도준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인권보도준칙을, 영상기자협회에서는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규정 모두 초상권 침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2.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관련 쟁점들: 공익과 동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방송심의규정 등에 초상권 관련조항을 담고 있지만 언론보도로 인

한 초상권 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 소송으로 넘어간 초상권 침해 건수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초상권 침해관련 조정 건수는 적지 않다. 2021년만 해도 초상권과 관련해 조정된 건수가 66건에 달한다. 한 달에 5~6건 내외의 초상권 침해조정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상권 침해의 면책기준인 ‘동의’ 및 ‘공익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하기 위해 언론보도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언론이 담당해야 할 공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초상권 침해의 면책기준이 되는 ‘공익성’ 및 ‘동의’가 어떤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면책되는 사유로는 ‘동의’와 ‘공익성’이 있다. 즉 방송영상에서 초상공개가 가능하려면 뉴스가치가 높아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뉴스가치가 높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다. 가령 특정 사건에 대해 취재기자는 뉴스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초상을 공개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초상권 침해로 본 판례가 대표적이다. 1998년 대법원은 언론이 흉악범의 초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범죄보도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범죄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이러한 판결은 범죄보도와 범죄자의 초상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법원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익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법원과 취재기자간의 인식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외에도 범죄보도와 함께 재난재해 보도는 초상권 침해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문이다. 재난재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크다. 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는 초상권을 둘러싼 한국 언론보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기자협회보, 2014. 4. 20.). 언론이 재난재해를 보도할 때에는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양식을 자제하고 보도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참혹한 현장의 모습보다는 재난구조 내용을 우선으로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현장 위주의 스케치 보도, 피해 입은 지역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도하는 데만 집중했다(최효진, 2006).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서도 언론은 경쟁적으로 미성년의 생존자나 실종자, 희생자는 물론 오염하는 유가족들의 얼굴 사진과 근접 영상을 여과없이 보도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동세호, 2016, 2쪽). 이런 보도 관행이 피해자들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한다(백선거·이금아, 2011; 이민규, 2011)는 주장이다. 실제로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 위원회의 초상권 침해관련 조정 건수는 208건으로 2013년 82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2015년에도 205건으로 초상권 침해관련 소송이 평소보다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재해 보도시 발생하는 초상권 침해는 언론 공익성의 가치가 대중의 관심 그리고 언론사의 수입과 연결되기 때문에 언론보도의 공익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웃나라 일본의 재난재해 보도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는데, 일본의 교도통신이나 시사통신 같은 뉴스통신사에서는 사망자의 시신이나 처참한 모습은 방송화면이나 지면에 거의 내보내지 않는다. 또 유족이 오염하거나 통곡하는 모습도 보도를 자제한다. 사고현장도 가능한 한 자극적인 화면을 여과해 보도하고, 사망자의 숫자나 공식적인 발표 내용 이외에 추측 보도를 자제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유승관·강경수, 2011, 163-164쪽). 우리나라의 재난보도와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초상권 침해 면책사유의 하나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도 동의를 초상권 침해에 대한 기본적인 면책사유로 보고 있다. 다만 동의에는 명시적인 동의와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데,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묵시적 동의이다. 일반적으로 초상의 촬영과 보도에 필요한 동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류종현·양재규, 2012; 엄동섭, 1999; 차형근, 2012; 함석천, 2006). 그러나 법원은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묵시적 동의의 입증 책임을 언론이 지도록 한다. 가령 언론보도 가능성이 높은 운동경기장이나 콘서트장에 있거나 길거리 응원에 나섰다가 방송이나 신문 등의 촬영대상이 되어 초상이 공표된 경우, 또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웃으면서 촬영에 응한 경우 묵시적 동의로 보아야 한다(함석천, 2006)는 것이 언론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촬영에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고 인터뷰에 응했다 하더라도 그 촬영이 어느 방송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촬영 사실을 알고 인터뷰에 응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초상의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합18444 판결)고 판결해 방송사의 묵시적 동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집회나 시위에 나섰다가 언론에 촬영되어 보도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서울중앙법원 2009. 9. 22. 선고 2009가합41071 판결; 서울중앙법원 2009. 10. 14. 선고 2009가합41071 판결; 서울중앙법원 2010. 1. 27. 선고 2009가합81994 판결). 판결의 요지는 집회나 거리시위에 나서는 행위자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의 취재보도 대상이 되는 것을 기대하거나 감수하고 있는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참가자의 초상이 촬영 공표되는 데에는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의 촬영 및 공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당사자의 ‘동의’가 초상권 침해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당사자가 촬영과 보도에 동의했지만 촬영 당시의 의도와 달리 부정적인 보도에 화면을 사용할 경우 법원은 초상권 침해로 판단했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1996년 ‘임수경 결혼식 호화 웨딩드레스 자료화면 사건’이다(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가합88220 판결).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밀 입북해 유명해진 임수경씨의 결혼식 장면을 KBS가 호화 웨딩드레스의 유행과 대여업자의 횡포를 고발하는 뉴스의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법원은 촬영 당시의 의도와 달리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동세호, 2016, 123쪽 재인용). 성승민대 MBC의 판결도 초상권 활용 및 공표에 동의했으나 동의 범위를 넘어 초상권을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문화방송이 <시사매거진2580>에서 대학생들의 신입생 환영회 문화를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전약속과 달리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비정상적이고 퇴폐 유흥에 물든 신입생 환영회 문화에 초점을 두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을 한 것에 대해 촬영 동의를 한 성승민이 문화방송의 보도가 촬영 당시 동의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문화방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의 예상과 다르게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며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동의를 얻어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거나 공표된 사진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김경호, 2003, 261쪽 재인용). 이 두 사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촬영당시의 의도와 다르게 영상을 활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상권 침해의 면책사유로 ‘공익성’과 당사자의 ‘동의’ 외에도 초상권 침해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면책여부가 갈린다. 언론중재법이나 방송심의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의 면

책기준으로 ‘공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공인’의 초상 사용은 사인에 비해 폭넓게 허용되며(이승선, 2007), 법원도 공인 또는 유명인의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서울지방법원 1995. 9. 27. 선고 95카3438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인 또는 공적 인물에 관한 것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초상권 침해가 면책되지 않는다(양재규, 2012; 이승선, 2004). 즉 법원은 공인의 초상권 보호는 일반인에 비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인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 초상권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는 사안의 공익성과 사안 당사자의 초상공개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초상권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독일에서는 공인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초상의 촬영과 공표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모나코 캐롤라인 공주가 길거리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활동하는 사진을 찍어 잡지에 공개한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Barnes, 2005; Bodansky, 2006; Voorhoof, 2015). 즉 한국에서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초상권 침해는 면책되지 않는데, 독일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도 공인의 초상 공개는 면책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어떤 경우에 면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는 일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그리고 방송심의규정에는 초상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기준이 바로 공익성과 당사자의 동의 여부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공인 또는 유명인의 초상은 일반인에 비해 허용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공인은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의 면책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는 초상권 침해의 면책기준이 되는 공익성, 당사자의 동의, 공인의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

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는데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카메라를 피하지 않고 응시해서 목시적 동의로 보았는데, 초상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 그리고 유명인을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언론에 비해 공인의 범위를 좁게 인정한 법원의 인식 차이에서 초상권 침해 분쟁은 계속된다. 따라서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인과 개인 그리고 법원간의 인식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초상권 침해 예방을 위한 영상보도가이드라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는 취재원과 취재대상자간 그리고 취재원과 법원의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이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의도를 갖고 보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문제는 초상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음에도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사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크게 관심을 보인 기관은 한국영상기자 연합회이다. 영상기자연합회는 2019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펴냈고, 보완작업을 거쳐 2020년 개정판을 냈다. 이로서 영상취재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셈이다. 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영상취재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영상취재 및 편집 시 혼동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Q&A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되는 ‘영상취재 가이드라인’이 공간에 따른 취재 윤리를 설명하고 있다면, ‘분야별 가이드라인’은 재난, 범죄, 선거와 같이 특정 상황별로 취재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담고 있다. 또 보도영상 편집 가이드라인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영상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가령 자료화면이나 블랙박스 영상 또는 취재원이 제공한 영상을 사용할 때 어떻게 편집해야 하는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상보도의 기본원칙을 ①보도의 정확성, ②보도의 공정성, ③보도의 독립성, ④인격권과 취재원 동의, ⑤취재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 ⑥ 영상기자의 생명, 안전 및 인격권 보호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인격권과 취재원 동의 및 취재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 항목에서 초상권 원칙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격권과 취재원 동의 부분에서는 “영상기자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 보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 음성, 대화,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초상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와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한국영상기자협회, 2000, 23쪽). 또 취재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에서도 “영상기자는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서 나아가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어린이와 노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영상기자는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투입되는 최전선의 최후이자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한국영상기자협회, 2000, 24쪽)고 적고 있다. 언론 보도에서 초상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는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도준칙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을까?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보도준칙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5개 분야에서 23개 내외의 보도준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참조). 가령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인의 초상권 문제, 집회 및 행사 현장에서의 초상권 문제, 일반인의 초상권 문제, 범죄자 및 이름이 알려진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 문제,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문제를 담고 있다. 각각의 사례는 법원의 판례와 함께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영상취재자들이 〈영상보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장에서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사마다 대부분 윤리강령과 보도준칙을 보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회사가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이재진, 2013)는 지적은 이런 가이드라인 제정이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 담겨있는 초상권 침해 사례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경기장에 와서 야구 축구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촬영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나?
	휴일 스케치를 할 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해서 사용해도 되는가?
	공원에서의 과도한 신체노출,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을 촬영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나?
	국립공원내에서 금지된 취사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을 촬영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나?
	출퇴근시간에 번잡한 광화문 거리를 풀샷으로 촬영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나?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유명 기업인의 상견례 장면을 촬영해 연예인 뉴스로 보도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나?
‘집회 및 행사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서울시내 유명 맛집에 들어가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촬영중임을 인식했고, 어떤 사람은 우스면서 V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를 묵시적 동의로 볼수 있는가?
	집회에 참여중이거나 시위중인 사람들을 촬영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나?
	집회참여자인데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촬영거부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경우 촬영했을 때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나?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집회도중 경찰과 시위대간 몸싸움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촬영했을 때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는가?
	만 14세이상의 중학생을 인터뷰하려고 한다 초상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등학생들의 행사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학교장의 동의를 받았다. 영상을 방송하는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범죄자 및 유명인 초상권 침해’	대학측의 협조를 얻어 강의실에서 수업중인 대학생들의 모습을 촬영, 보도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범죄자인 미성년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이 영상을 보도에 활용하였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범죄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촬영을 하는데, 구경나온 시민들을 함께 촬영했다. 영상을 보도할 때 초상권 침해 문제는 없는가?
	경찰서에서 과립치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촬영해 보도했다. 이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10년전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범죄자 A가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A의 출소장면을 보도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사건의 피의자의 체포 영상을 보도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A는 유명연예인으로 자신의 SNS에 수시로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사진을 보도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전투에서 희생된 시신을 촬영했다. 영상을 방송하는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을까?
	사건사고, 폭력 폭행의 순간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여 보도하였다. 영상을 방송하는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자살한 사람의 시신을 촬영해 방송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방송사DB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재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한국의 영상취재기자들이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사안들을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한국 영상취재기자들은 취재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규정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방송사의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관련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⁴⁾. 조사 대상은 영상기자협회 회원이며, 조사기간은 2022년 10월 13일(목)부터 22일(토)까지 열흘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자 선정 시 성별, 연령별, 매체 유형별로 별도의 쿼터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데이터만을 수집하였는데, 조사기간 동안 153명의 영상취재기자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⁵⁾. 설문조사에 응답한 취재기자들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3명 중 150명이 남성이고, 지상파채널 소속기자도 65%로 상당히 높다⁶⁾. 이런 표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석결과에 남성 및 지상파소속 영상취재기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성별	N	%	연령	N	%
남자	150	98.0	만19-39세	53	34.6
여자	3	2.0	만40-49세	45	29.4
합계	153	100.0	만50세이상	55	35.9

- 4) 우선 이 연구를 위해 흔쾌히 설문조사를 허락해주신 한국영상기자협회 나준영 회장님과 조사에 참여해주신 영상취재기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5)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원은 2022년 11월 기준 총 675명이다. 이중 153명이 본 조사에 응답했는데, 이는 전체의 22.7%에 해당한다.
- 6) 한국영상기자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영상취재기자의 성별분포는 2022년 11월 기준 남성은 664명, 여성은 11명으로 여성의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본 조사에서도 총 응답자 153명 가운데 여성은 3명(1.9%)으로 전체 모집단의 비율(1.6%)과 비슷하게 나왔다.

언론사유형	N	%	근무기간	N	%
지상파채널	99	64.7	10년이하	54	35.3
종합편성채널	31	20.3	11-20년	41	26.8
보도전문채널	23	15.0	21년이상	58	37.9
합계	153	100.0	합계	153	100.0

다음 조사를 위해서는 설문지를 구성해야 한다. 설문에는 영상취재기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으로는 성별, 영상취재 활동기간 그리고 소속 언론사 유형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국영상기자연합회에서 발간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서 초상권 침해관련 사례들을 취합하여 설문문항으로 구성했는데, 가령 “경기장에 와서 야구, 축구 등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촬영했는데(영상보도가이드라인, 2020년, 45쪽), 이 영상이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측정 유목은 ①문제가 되지 않는다, ②다소 문제가 있어 편집상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③어떻게 해도 문제가 된다고 측정하였지만, 문항에 따라 ①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②초상권 침해가 된다는 2개 유목으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 담긴 초상권 침해관련 사례는 총 23개였고,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집회 및 행사현장에서의 초상권’, ‘일반인의 초상권’, ‘범죄자 및 유명인의 초상권’,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등이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관련 사례는 7개, ‘집회 및 행사 현장에서의 초상권’ 관련 사례는 3개, ‘일반인의 초상권’ 관련 사례도 3개, ‘범죄자 및 유명인 초상권’ 관련 사례는 6개,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관련 사례는 4개이다⁷⁾. 이렇게 구성된 설문데이터는 SPSS 20.0버전으로 분석하였다.

7)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4개 사례에는 “방송사DB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재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은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한국의 영상취재기자들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초상권 침해 관련 사안들을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영상보도가이드라인>에 있는 초상권 침해 관련 사례로 뽑은 23개에 대해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우선 23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집회 및 행사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범죄자 및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등이다. 이렇게 각 유형별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지 수준을 살펴보고, 그 다음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어떤 사안을 특별히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령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안을 정확히 인지하는지 아니면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 사안을 정확히 인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취재활동 기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살펴보았다.

1. 유형별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영상취재기자 10명중 7명은 개인의 초상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언론사 유형별, 취재기자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어떤 경우에서든 개인의 초상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8.8%에 불과했다. 또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사례 23개 중에서 12~13개 사례에 대해서만 정확히 인지하고⁸⁾ 있어 초상권 침해규정에 대한 인식이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상

엄격히 보면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과 관련은 없고, 영상 편집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의 사례를 별도로 유형화하기 어려워 재난 및 사고현장 초상권에 포함시켜 분석했다.

8) 초상권 인지수준은 설문에서 초상권 침해의 문제성을 묻는 23개 문항에 대해 정확히 답했으면 1점, 정확히 답을 하지 못했으면 0점을 준 다음, 이를 합산하여 산

취재기자 자신이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92.2%)이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해 실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지수준과 기자 스스로 알고 있다는 인식수준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별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영상취재기자들은 사건 사고현장에서 시신 촬영이나 폭력 폭행 등이 담긴 영상 그리고 방송사 DB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사용함에 있어 개인의 초상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는 4개 사례로 질문을 했는데, 평균 인지도는 3.11로 평균 4개 사례 중에서 3개 사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외에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규정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왔는데, 7개 사례 중에서 4.3개를 정확하게 인식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인지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반인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왔다. 반면 ‘일반인 초상권 침해’는 3개 사례로 조사했는데, 평균 인지수준은 0.64로 1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영상취재기자들이 일반인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은 ‘집회 및 행사 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사례인데, 3개 사례에 대해 초상권 침해 규정을 정확히 인지한 건수는 1.37로 나왔고, ‘범죄자 및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6개 사례 중 정확히 인지한 건수는 3.12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영상취재기자들이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가장 취약한 인식을 보이는 부분은 일반인 및 범죄자 그리고 유명인의 초상권에 대한 인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일반인 중에서는 초, 중, 대학생의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출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해 정확히 답하면 23점이 되고, 하나도 맞추지 못하면 0점이 된다. 조사에 답한 영상취재기자들의 초상권 인지수준은 최하 4점에서 최고 18점까지의 분포를 갖는다.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초상권 침해의 가장 강력한 면책 사유의 하나는 바로 ‘동의’인데,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초상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초등학생들의 행사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36.6%)고 인식하거나 문제가 되면 ‘편집상의 기술적 조치’(49.0%)로 초상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의 행사장면을 촬영하려면 학교장의 동의와 함께 초등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 즉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하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을 인터뷰하려고 한다. 초상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15.7%), ‘당사자와 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40.5%)는 응답이 56.2%로 미성년자 초상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오인율이 높았던 문항도 일반인 초상권관련 문항이었는데, 가령 “대학 측의 협조를 얻어 강의실에서 수업중인 대학생의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는데,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없는가”하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대학 측의 동의와 함께 대학생 당사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며, 대학 측의 동의만으로 촬영해 보도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상취재기자들의 응답은 ‘초상권의 문제가 없다’(50.3%), ‘편집상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43.8%)는 응답이 94.1%로 대부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관련된 조정사례로는 2014년의 판례가 있다. 이 사례는 한 방송사에서 서울시내 유명대학 강의실 수업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학교측과 수업 담당 교수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고, 한 학생을 미리 섭외해 수업 도중 질문을 하도록 했고, 질문이 이어질 때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촬영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이후 카메라에 찍힌 한 학생이 자신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해당 언론사는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다(2014서울조정1010,

영상보도가이드라인 40쪽).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사유는 수업을 듣는 학생 전부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범죄자 및 유명인의 초상권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범죄자 및 유명인들의 초상권 침해관련 사례 6개 중에서 영상취재 기자들이 잘못 인식한 사례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경찰서에서 파렴치범으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를 촬영해 보도한 것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가”하는 문항과 “범죄자인 미성년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이 영상을 보도에 활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하는 것이다. 우선 경찰서에서 파렴치범으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를 촬영해 보도한 것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초상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항에 대해 ‘어떻게든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문제는 있지만 편집상의 조치가 필요하다’(81.7%), ‘문제가 되지 않는다’(7.8%)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범죄자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음성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초상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범죄자인 미성년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이 영상을 보도에 활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항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응답은 27.5%에 불과했고, 나머지 62.7%는 ‘편집상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9.8%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유명인의 초상과 관련해서는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SNS에 수시로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 연예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보도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하는 질문이었다. 이 사례에 대한 답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인데, 조사결과는 55.6%만이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4.4%는 인터넷상에서 이미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는 공개 설정된 SNS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았다. 관련 사례는 쿼어축제관련 보도에서 방송사는 해당

축제에 참가한 사람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서 ‘○○○목사 페이스북 캡처’라는 출처를 표시하고 보도했는데, 해당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가 언론사를 상대로 무단 사진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100만 원)을 인정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소61059). 피고의 항소로 2심 재판도 개시되었는데,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을 공개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같은 언론사의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관행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측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7023 판결)(영상보도 가이드라인 95쪽 재인용).

이와 유사한 경우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유명인에 대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왔는데, 문제의 문항은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유명 기업인의 상견례 장면을 촬영해 연예인 뉴스로 보도했는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하는 것이었다. 이 문항에 대한 답은 ‘어떤 경우든 초상권 침해가 된다’인데, 영상취재기자들의 82.7%는 ‘다소 문제는 있지만 편집상 기술적 조치를 하면 보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고, 14.4%는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은 사적 장소에 비해 허용범위가 넓고, 유명인도 일반인에 비해서는 초상권 보호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2013년 법원의 판결은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판결은 유명 기업인의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을 촬영, 보도한 것에 대한 초상권 침해 소송이었는데, 법원은 해당 장소가 호텔 앞, 거리 등으로 공공장소였지만 사생활 및 초

상권 침해를 인정해 1,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그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이 판례는 유명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 및 사생활관련 측면에서 인격권이 덜 보호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사적 영역을 공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사에 사용된 초상권 침해 사례들의 인지율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4> 유형별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한 인지수준

초상권 침해 유형	N	인지 건수	인지율(%)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7	4.31	61.6
집회 및 행사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3	1.39	46.3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3	0.64	21.3
범죄자 및 유명인 초상권 침해	6	3.12	52.0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4	3.11	77.7
평균	23	12.56	54.6

<표 5> 초상권 침해 사례별 인지율(단위: %)

초상권 침해 사례	오인율	인지율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경기장에 와서 야구 축구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촬영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나?	41.8	58.2
휴일 스케치를 할 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해서 사용해도 되는가?	85.0	15
공원에서의 과도한 신체노출,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을 촬영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나?	45.1	54.9
국립공원내에서 금지된 취사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을 촬영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나?	13.7	86.3
출퇴근시간에 번잡한 광화문 거리를 폴샷으로 촬영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나?	64.7	35.3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유명 기업인의 상견례 장면을 촬영해 연예인 뉴스로 보도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나?	37.3	62.7

초상권 침해 사례	오인율 인지율	
서울시내 유명 맛집에 들어가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촬영중임을 인식했고, 어떤 사람은 우스면서 V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를 묵시적으로 볼수 있는가?	76.5	23.5
‘집회 및 행사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집회에 참여중이거나 시위중인 사람들을 촬영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나?	58.2	41.8
집회참여자인데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촬영거부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경우 촬영했을 때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나?	63.4	36.6
집회도중 경찰과 시위대간 몸싸움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촬영했을 때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는가?	26.8	73.2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만 14세이상의 중학생을 인터뷰하려고 한다 초상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84.3	15.7
초등학교들의 행사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학교장의 동의를 받았다. 영상을 방송하는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51.0	49
대학측의 협조를 얻어 강의실에서 수업중인 대학생들의 모습을 촬영, 보도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56.2	43.8
‘범죄자 및 유명인 초상권 침해’		
범죄자인 미성년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이 영상을 보도에 활용하였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37.3	62.7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범죄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촬영을 하는데, 구경나온 시민들을 함께 촬영했다. 영상을 보도할 때 초상권 침해 문제는 없는가?	20.3	79.7
경찰서에서 파렴치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촬영해 보도했다. 이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18.3	81.7
10년전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범죄자 A가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A의 출소장면을 보도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나?	90.2	9.8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사건의 피의자의 체포 영상을 보도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22.9	77.1
A는 유명연예인으로 자신의 SNS에 수시로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사진을 보도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44.4	55.6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전투에서 희생된 시신을 촬영했다. 영상을 방송하는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을까?	33.3	66.7
사건사고, 폭력 폭행의 순간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여 보도하였다. 영상을 방송하는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27.5	72.5

초상권 침해 사례	오인율 인지율	
자살한 사람의 시신을 촬영해 방송할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가?	92.2	7.8
방송사DB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재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	19.6	80.4

2. 초상권 침해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어떤 사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또는 틀리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또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편집상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영상취재기자들은 편집상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사례들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었다. 편집상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7건의 사례에 대해 4건 정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또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도 8건 중 4.5건을 인지하고 있어 평균보다 높은 인지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잘 분별해내지는 못했다.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 총 9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3.7개 정도만 인지하고 있어 낮은 인지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영상취재기자들은 명확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편집상의 기술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거나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취재기자 활동기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한 인지수준

초상권 침해인식	N	인지건수	인지율(%)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	8	4.5	56.3
편집상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7	4.06	58.0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9	3.7	41.1
평균	23	12.56	54.6

3. 취재활동 기간에 따른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취재활동 기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영상취재기자들의 활동기간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F=9.55$, $p<.001$)를 보였는데, 취재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10년 미만 기자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M=13.57$ 점)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21년이상($M=12.16$ 점), 11~20년($M=11.83$ 점)의 순으로 나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일반적으로는 취재활동 기간이 길수록 초상권 침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조사결과는 취재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10년 미만 기자 집단에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초상권 침해를 유형별로 나눠 취재활동 기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공개된 장소 및 행사 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취재활동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취재활동 기간이 짧은 10년 이하 기자 집단에서 초상권 침해규정을 가장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에 대한 초상권 침해’, ‘범죄자 및 유명인에 대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취재활동 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재난,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취재활동 기간이 길수록 초상권 침해규정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공개된 장소 및 집회, 행사 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취재활동기간이 짧은 10년 이하 기자 집단에서 높게 나왔으나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취재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기자 층에서 높은 인지수준을 나타냈다.

〈표 7〉 영상취재 활동기간에 따른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검증

종속변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일반 인식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인식		집회 및 행사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인식	
	<i>M</i>	<i>SD</i>	<i>M</i>	<i>SD</i>	<i>M</i>	<i>SD</i>
10년이하	13.57	2.11	4.83	1.34	1.85	0.90
11-20년	11.83	2.27	4.00	1.34	1.20	0.64
21년이상	12.16	2.06	4.03	1.38	1.10	0.61
평균	12.57	2.25	4.31	1.40	1.39	0.81
	<i>F</i> =9.55***		<i>F</i> =6.30**		<i>F</i> =16.59***	

n.s.=not significant, * *p*<.01, ** *p*<.01, *** *p*<.001

종속변수	일반인에 대한 초상권 침해 인식		범죄자 및 유명인 초상권 침해 인식		재난,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인식	
	<i>M</i>	<i>SD</i>	<i>M</i>	<i>SD</i>	<i>M</i>	<i>SD</i>
10년이하	0.67	0.61	3.24	1.06	2.98	.90
11-20년	0.59	0.59	2.98	1.08	3.07	.96
21년이상	0.66	0.66	3.10	1.04	3.26	.83
평균	0.64	0.62	3.12	1.06	3.11	.89
	<i>n.s.</i>		<i>n.s.</i>		<i>n.s.</i>	

n.s.=not significant, * *p*<.01, ** *p*<.01, *** *p*<.001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방송사의 영상취재기자들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을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영상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내용은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발간한 〈영상보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상권 침해관련 사례들에 대해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영상보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초상권 침해 사례는 23개인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집회 및 행

사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범죄자 및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로 나눌 수 있다. 설문조사는 2022년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되었으며, 153명의 기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보다는 언론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에서 개인의 초상권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은 최근 개인의 초상권을 언론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언론과 법원간의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조사결과는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관련 23개 사례 중에서 12~13개 사례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인지율은 54.7%로 초상권 침해규정에 대한 인지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지수준이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와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였다.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지율은 77.7%,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는 61.6%로 전체 평균(54.6%)보다 모두 높았다. 반대로 인지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및 ‘범죄자 및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로 나왔다. 특히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지수준은 0.64로 나와 영상취재기자들은 3개 사례 중에서 평균 1개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영상취재기자들은 활동 기간에 따라서도 초상권 침해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취재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10년 미만 기자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는 취재활동 기간이 길수록 초상권 침해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그렇다면 왜 취재경험이 많은 영상기자들이 취재경험이 적은 영상기자에 비해 인식

수준이 낮을까를 생각해 보면,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은 미디어 환경이 영상 중심으로 재편되고 개인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10년 전 20년 전 취재환경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으며, 이런 환경에서 취재관행을 학습한 세대에게는 초상권 침해가 오히려 낯설게 보였을 것이다. 실제로 <표 1>의 초상권 침해관련 법원의 소송건수를 보면 1990년부터 1997년까지 8년 동안 초상권 침해관련 소송은 5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8년 한해에만 초상권관련 소송이 7건으로 늘어났고 그 이후에도 매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1-8건 사이로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취재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초상권 침해 소송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는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 좀 더 예민한 인지수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최근 미디어관련 소송 이슈가 늘어나면서 언론사 및 언론유관단체에서는 입사한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취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적 효과가 초상권 침해규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연구에서는 영상취재기자들이 초상권 침해의 어떤 분야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가령 초상권 침해가 분명한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아니면 초상권 침해가 아닌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또 아니면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편집상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편집상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사례에 대해 4개 사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반대로 분명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9개 사례에 대한 인지도는 3.6개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첫째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의 하나로 편집상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블러 처리나 모자이크 처리, 음성변조 등이 초상권 침

해의 소지를 없애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물론 개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편집의 과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영상에 이런 블러 처리를 할 경우,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영상취재기자들이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일반적인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명백히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안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언론사나 협회 차원에서 영상취재기자들에 대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초상권 침해관련 여러 유형 중에서 영상취재기자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바로 ‘재난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였는데, 재난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규정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온 이유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심했던 학습의 결과로 보인다. 2014년과 2015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초상권 침해 조정건수는 200건을 넘었다. 전년도인 2013년의 82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초상권 침해관련 조정건수가 많아지면서 영상취재기자들은 자연스럽게 직, 간접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 학습이 되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초상권 침해는 학습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현장에서 영상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초상권 침해사례는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영상취재기자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자가 153명으로 많지 않고, 또 이들이 대부분 남성이며, 지상파채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연구결과의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영상취재기자 중에 여성기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지

나치게 낮게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응답자가 지상파방송에 집중되어 있어 종합편성채널 등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언론사 영상취재기자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연구는 전체 영상취재기자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살펴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다양한 언론사 영상취재기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한계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강형철 (2007).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1호, 7-46
- 기자협회 (2014. 4. 20.). 기자협회, 세월호 탐사보도 가이드라인 발표.
URL: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33371
- 김경호 (2004).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2권 제2호, 88-120
- 등세호·김성용·안호림 (2016).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소송의 경향과 특성.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1호, 370-381
- 류중현·양재규 (2010). <기자와 변호사가 함께 쓴 초상권 이야기>, 서울: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 박진우 (2008). 프랑스의 사진, 영상 보도관련 주요 동향. <언론중재> 제28권 제1호, 29-43
- 손영준 (2012). 언론조정 중재사례를 통해 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제32권 제4호, 7-19
- 심석태 (2014).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과정과 그 영향, <언론과 법> 제13권 제1호, 251-282
- 양재규 (2012). 공인이라도 사생활 공개할때는 신중해야; 유명인 보도시 주의할 점. <신문과 방송> 제496호, 102-106
- 엄동섭 (1999). 방송과 초상권. <방송문화> 제214호, 50-53
- 유승관·강경수 (2011).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 재해 뉴스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연구> 가을호, 140-169
- 유의선 (2008). 디지털 취재환경에서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383-414
- 이승선 (2004).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의 '공적 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8권 제3호, 293-334
- 이승선 (2007). '공적 인물'이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함의: 방송사 사건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8권 제1호, 96-131
- 이승선·김연식 (2009).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

연구〉 제19권 가을호, 65-94

이인호 (2015). 한국 언론자유 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진단. 〈언론과 법〉 제 14권 제3호, 1-47

이재진·동세호 (2015). 방송관련 초상권 침해소송에 나타난 ‘동의’의 적용 범리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101-148

음선필 (2020). 이른바 성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보도준칙의 헌법적 문제점. 복음언론인회(가칭) 토론회 발제문

조선일보 (1993. 7. 9.), “매도당한 이대생 3명에 3천만원씩 배상하라”

차형근 (2012). 국내 초상권 판결 경향에 대한 고찰. 〈언론중재〉 제32권 제 1호, 67-89

함석천 (2006).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법조〉 제55권 제 12호, 191-222

언론중재위원회, https://www.pac.or.kr/kor/pages/?p=69&b=B_1_6&cate=PD01

URL: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

URL: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217373>

Barnes, R. D. (2005). The Caroline Verdict: Protecting individual privacy against media invasion as a matter of human rights. *Penn State Law Review*, 110(3), 599-614.

Bodansky, D. (2006). Von Hannover v. Germany: ECHR decision on balance between privacy right of public figures and freedom of the press. *America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Press*, 196, 100-116

Voorhoof, D. (2015). Freedom of expression, the media and journalists: case-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trasbourg, France: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video reporters on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Miseon Shim
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kinds of perceptions video reporters have about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when reporting and how accurately they are aware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said right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wareness of video reporters'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The <Video Reporting Guidelines> published by the Korea Video Journalists Association was used as a reference, and 23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in the <Video Reporting Guideline> were found. The 23 cases were divided into five types, including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portraits in public places,"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portraits in the venues of assemblies and events," "infringement of the public's rights of portraits,"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of criminals and celebrities," and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t the scene of disasters and accidents." To summarize the survey results, first, video reporters were aware of only 12 or 13 cases out of 23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Second, the highest levels of recognition were on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t the scene of a disaster or accident" and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in public places." Conversely, the lowest levels of recognition were on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of ordinary people” and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of criminals and celebrities.”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portrait rights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video reporters’ careers. Fourth, Korean video reporters had the highest level of understanding in recognizing whether technical actions in editing are necessary to prevent infringing on portrait rights. On the contrary, awareness of the cases that can be clearly seen as infringements of portrait rights is relatively low.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be used as significant basic data to raise the awareness of video reporters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Keywords: Perception of video reporters on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Five types of portrait rights infringement, Video reporter’s career

[논문투고일 2022. 10. 31. 논문수정일 2022. 11. 23. 게재확정일 2022. 11. 25.]